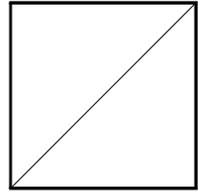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21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2. 22. (제 22 차)	

신용보증기금 정관 개정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2.

1. 의결주문

- 신용보증기금이 요청한 붙임의 신용보증기금 정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인가한다.

2. 제안이유

- 신용보증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정관 개정안을 인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 보완(제12조, 제13조)

- 비대면 업무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영상회의 등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한 회의를 회의방식에 포함하고(제12조제1항), 의결방법으로서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서면결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제13조제4항)

구분	현행	개정(안)
회의 소집 (§12①)	• 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	• 위원회 <u>회의(영상회의 포함)</u> 는 이사장이 소집
의결방법 (§13④)	< 신 설 >	• <u>필요 시 서면 의결 가능</u>

나.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제35조의2)

- 정규직 전환 관련,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라 자회사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모회사 신용보증기금 정관에 자회사 설립근거와 구체적 위탁사업 범위 및 자회사의 경영독립성 보장 조항 등을 명기

구분	신설 내용
자회사 설립 운영 (§35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51조의2에 따라 자회사 설립 • <u>기금은 다음의 업무를 위탁(시설관리, 환경미화, 보안, 고객센터 등)</u> • <u>자회사의 자율적 운영 보장 및 책임경영체계 확립</u>

다. 그 밖의 용어 및 표현 정비

- 정부조직법, 신용보증기금법 및 은행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에 기재된 용어 및 표현을 정비

현 행	개정(안)	관련 조문
금융기관	<u>금융회사등</u>	제4조, 제9조, 제35조, 제44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은행법」에 따른 <u>은행</u>	제9조
중소기업청장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제9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u>「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u>	제3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u>채권추심회사</u>	제3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제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붙 임 > 신용보증기금 정관(안)

신용보증기금 정관

제정	1976.05.20.	개정(14)	1986.02.27.	개정(28)	2013.12.27.
개정(1)	1979.03.07.	개정(15)	1986.06.28.	개정(29)	2015.01.28.
개정(2)	1979.05.10.	개정(16)	1987.03.07.	개정(30)	2020. . . .
개정(3)	1979.10.13.	개정(17)	1989.11.02.		
개정(4)	1980.01.13.	개정(18)	1991.04.12.		
개정(5)	1980.03.14.	개정(19)	1994.03.07.		
개정(6)	1980.12.04.	개정(20)	1995.06.20.		
개정(7)	1981.02.28.	개정(21)	1995.12.30.		
개정(8)	1982.12.07.	개정(22)	1997.03.05.		
개정(9)	1983.02.28.	개정(23)	1998.01.14.		
개정(10)	1983.05.18.	개정(24)	1998.02.25.		
개정(11)	1984.05.17.	개정(25)	2001.03.27.		
개정(12)	1984.10.06.	개정(26)	2007.06.29.		
개정(13)	1985.02.22.	개정(27)	2009.09.11.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법인은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07.6.29>

제2조(목적) 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제3조(본점·지점·출장소와 대리점) ① 기금은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삭제 <2007.6.29>

제4조(기본재산) ① 기금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27,913,010,241원 51전으로 한다.
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00.>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

제5조(정관의 변경) 기금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11.>

제6조(공고의 방법) 기금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일간 서울신문 및 대구광역시에 발간하는 일간 매일신문에 게재한다.<개정 2015.1.28.>

제7조(정관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 기금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관에 정하는 이외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기금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법,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3.27, 2007.6.29., 2009.9.11., 2013.12.27., 2020.12.00.>

- 1. 이사장
 - 1의2. 금융위원회가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1의3.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1의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2.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3. 중소기업은행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5.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3인
 - 6. 기업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하는 자 2인
- ②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당해 기관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를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기금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소집) ① 위원회 회의(영상회의 등 모든 구성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회의방식을 포함한다)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2.00.>

-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개정 2020.12.00.>
- ③ 정기회의는 2월과 11월에 개최한다. <개정 1998.2.25>
- ④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위원 과반수 또는 감사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⑥ 이사장은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기금의 전무이사, 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의안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00.>

제14조(회의참여의 제한) 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이사장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권한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11>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 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직원

제18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상임이사 5인 이내, 비상임이사 8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7.6.29>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중 기금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7.6.29>

② 이사장은 기금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금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기금을 대표한다. <신설 2007.6.29>

③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29>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6.29>

⑤ 이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과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신설 2007.6.29>

⑥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의 순위에 따른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29>

⑦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7.6.29>

제20조 삭제 <2007.6.29>

제21조 삭제 <2007.6.29>

제22조(결직금지 의무 등) ① 기금의 임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6.29>

② 기금의 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정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기금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③ 기금의 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9.11>

제23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 상임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제25조(임원의 보수) 기금의 임원의 보수는 각 사업년도의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①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7.6.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6.29>

③ 삭제 <2007.6.29>

제27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상임이사과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6.29>

제28조(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7.6.29>

②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6.29>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7.6.29>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⑤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 의결의 방법)제2항, 동법 제391조의3(이사회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07.6.29>

제29조 삭제 <2007.6.29>

제30조 삭제 <2007.6.29>

제5장 업무와 그 집행

제31조(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12.27.>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 2의2. 보증연계투자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2007.6.29, 2009.9.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998.2.25> <개정 2001.3.27, 2007.6.29, 2009.9.11>

제32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7.>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보증방법
- 나. 보증제한업종
- 다. 보증기간
- 라. 보증료
- 마. 보증채무의 이행

1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보증연계투자방법
- 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 다.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한도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재보증방법
- 나. 재보증기간
- 다. 재보증제한업종

4.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보증대상 채무
- 나. 유동화대상 자산
- 다. 위험관리방안
- 라.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9.11]

제33조(신용보증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② 기금의 같은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의 최고한도는 30억원에서 자금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같은기업에 대한 재보증의 최고한도는 2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5>

③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2.25> <개정 2009.9.11>

제34조(업무계획) ① 기금은 사업년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9.11>

- ②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당해년도 개시 1월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1>
- ③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9.11>
- ④ 기금이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의 위탁)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의 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2007.6.29., 2009.9.11., 2020.12.00.>

- 1. 금융회사등: 제31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31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업무로서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9.11>
- ②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1.>

제35조의2(자회사 설립 및 운영) ① 기금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시설관리, 환경미화 및 보안 업무
 - 2. 고객센터 및 서비스데스크 관리·운영 업무
 - 3. 그 밖에 이사장이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기금은 자회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자회사가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위탁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본조신설 2020.12.00.]

제6장 회계

제36조(회계 원칙) ①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이를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제37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 및 회계) 기금의 예산 및 회계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6.29>

제39조 삭제 <2007.6.29>

제40조(상여금과 퇴직금) 기금은 임원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하는 임원과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29>

제41조(연구비와 해외파견비) 기금은 우수한 직원 또는 기타 적격자에게 연구비 또는 해외파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삭제 <2007.6.29>

제43조(이익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순이익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월이익금으로 유보

제44조(기본재산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9.11, 2020.12.00.>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45조(결손보전)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보전신청한다. <개정 2001.3.27>

제7장 보칙

제46조(직제) 삭제 <1982.12.20>

제47조(고문·촉탁) 기금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이나 촉탁을 둘 수 있다.

제48조(권리의무의 승계) 기금은 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기금에 관한 업무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신용조사에 관한 업무를 인수하며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기금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기금의 첫 회계년도는 기금이 설립된 후 업무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의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대행기관의 제규정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위원의 기명날인) 설립위원 일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197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재무부차관 조 충 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재무부 재정차관보 고 병 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재무부 이재국장 하 동 선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36번지의 1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사무국장 김 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36번지의 1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 김 용 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번지
한국은행 이사 박 성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황학동 14번지
한국감정원 부원장 홍 성 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72번지 23
장 위 상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2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이 정관은 198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이 정관은 199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이 정관은 199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이 정관은 199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이 정관은 199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이 정관은 199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3)

이 정관은 법시행령 개정규정에 의거 199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4)

- ①(시행일) 이 정관은 법시행령 개정규정에 의거 199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부터 적용한다.

부 칙(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6)

이 정관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9년 11월 21일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본다.

② 제3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부칙(28)

이 정관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9)

이 정관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0)

이 정관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산업금융과
연 락 처	02-2100-2862